



경기도의회 제389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의안번호 제2623번)

2026. 4. 22.(수)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경기도지사
2. 발의연월일 : 2026. 1. 22.
3. 회부연월일 : 2026. 1. 2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경기도서관 조직 신설에 따라 경기도서관 업무를 정비하고, 개관 및 휴관 등 도서관 운영,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경기도서관의 설치 기준,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대상 기관 및 자료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위탁종료 및 경기도서관과의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서관 개관 및 휴관, 자료 및 시설사용, 회원 제도, 행정간행물의 수집·제공, 도서관자료의 재활용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의2까지).
- 라. 행정간행물 관리 업무 이관 및 행정도서관 운영 변경 등으로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Ⅲ. 절차 이행 여부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2025. 9. 26. ~ 10. 16.) : 의견 없음

나. 부서 협의

- 성별영향 평가: 미반영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국어책임관 감수: 일부반영
- 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서 첨부(경기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향후 5년간 44,16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조례안 시행 시 추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소요액)	44,165	8,833	8,833	8,833	8,833	8,833
경기도서관 운영 예산	44,165	8,833	8,833	8,833	8,833	8,833

IV.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검토

가. 제안취지와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서관의 정식 개관(2025. 10. 25.) 및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소관 업무를 개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 세부적으로는 광역대표도서관 기능을 대행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위탁 종료 및 통합 운영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개관 및 휴관, 시설 사용, 회원제 등 운영 전반의 실무 근거를 마련함. 또한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위임 사항인 도서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조례에 구체화함.
- 아울러 별개의 조례로 운영되던 ‘경기도 행정도서관’의 간행물 관리 업무 등을 신설된 경기도서관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기존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입법 목적이 다른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의 내용을 단일 조례에서 통합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정책 수행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각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제2호는 현행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이버도서관”의 정의를 삭제하고, 「도서관법」 제25조1)에 따라 설치되는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경기도서관”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
 - 먼저 “경기도서관”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정식 개관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반면, “사이버도서관”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현행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경과조치)에 따른 임시 대행 체제의 종료에 기인한 것임. 이는 온라인 기반 도서관 서비스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으로 일원화여 통합 관리하려는 취지임.
 - 즉, 기존 사이버도서관이 수행해 온 정보통신망 기반 서비스는 향후 경

1) 「도서관법」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설립·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6. 5. 12.]

기도서관의 업무에 통합되어 연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므로, 조례 체계상 관련 업무가 상실되거나 불명확해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항의 개정은 현행 제4장(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서관' 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치와 연계되는바,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해당 조문(안 제16조 ~ 안 제19조의2)에서 후술함.

○ 안 제4조(설치)는 앞선 제2조(정의) 등에서 이미 「도서관법」을 '법'으로 약칭함에 따라, 본 조항에서도 해당 약칭을 일관되게 사용한 것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통일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 없음."

○ 안 제6조(구성)와 11조(간사)는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실제 조직 운영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부위원장을 '경기도서관장'으로 명시하되, 관장이 이미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국장급 당연직 위원' 범위에서는 제외함으로써 직제상의 정합성을 확보함. 또한 별도의 과장 직제 없이 관장 직속 팀제로 운영되는 현 조직 여건을 반영해 간사를 팀장급으로 규정한 것은 신설 조직 편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3조(설치·운영)와 제14조(도서관자료의 제출)는 경기도서관의 실제 운영 체계를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입법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려는 것임.

- 먼저 안 제13조(설치·운영)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경기도서관의 인력·시설·장서 기준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실제 조직 운영 상황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임. 특히 제3항에서는 현행 제14조(업무)에 있던 업무 내용을 통합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다만, 제13조제3항제3호에 ‘독서문화 진흥’ 사무를 명시한 것은 경기도서관이 도민의 독서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앞서 제안 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 대상이 다름에도 이를 단일 조례에서 통합 규율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도서관의 설치·운영 기준 및 자료 관리 등 지식정보 기반시설로서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는 「도서관법」과, 국민의 독서 역량 증진 및 환경 조성 등 인적 활동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문화진흥법」은 그 근거 법령의 성격과 지향점이 확연히 상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조례에 병합할 경우, 독서 문화 진흥 사무가 도서관 운영 관리의 종속적 업무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정책의 독립적인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입법 목적이 상이한 두 사무의 혼재는 정책 집행 역량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각 상위법령이 지향하는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정책 수행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사무를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법 정책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도서관자료의 제출)**는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라 도내 공공간행물의 제출 범위를 구체화한 것임. 특히 제출 대상을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등)까지 확대한 것은, 도의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자료를 공적 지식 자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더불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라는 제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도내 지식 자산의 누락을 방지하고 적시에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신속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운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2(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14조의4(운영위원회의 운영)**는 앞서 기술한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직제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을 기존 ‘실국장 2명’에서 ‘실국장 1명과 경기도서관장 1명’으로 조정하고, 과장 직제 없이 관장 직속 팀제로 운영되는 조직 여건을 고려하여 간사를 ‘팀장급’으로 규정한 것은 실제 직제와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적정함.

- 안 제15조(조직·인력)는 안 제13조에 규정된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확보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임. 이는 상위법령상 광역대표도서관의 필수 요건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서관이 전문 인력 기반의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6조(개관 및 휴관), 안 제17조(자료의 이용 등), 제17조의2(도서관 회원제도)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위탁 종료 및 경기도서관과의 통합에 따라, 현행 사이버도서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기도서관의 운영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개관·휴관, 자료의 열람·대출, 회원제도 등 도서관 운영의 핵심 본질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도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안 제17조의3(행정간행물 수집·제공)은 기존 ‘경기도 행정도서관’에서 수행하던 행정간행물 수집·제공 사무를 경기도서관으로 모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임. 도 및 산하기관의 정책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정 지식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행정 정보의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의4(도서관자료의 관리)는 보존 가치가 낮아진 자료의 폐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무상배부나 기증을 통한 자원의 선순환 근거를 명시함. 이는 경기도서관이 지향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히 장서 관리를 넘어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큼.

- 결과적으로 폐기 자원의 사회적 재활용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도민에게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ESG)²⁾을 실천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는 자원 순환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큼.

○ 안 제18조(출입 및 이용 제한), 안 제19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안 제19조의2(시설 사용료 등)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의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ESG경영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공공기관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 사회적 약자 보호, 투명한 운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의미함.

- 이는 감염병 예방 및 소란 행위 방지 등 구체적인 출입 제한 기준을 명시하여 대다수 이용자가 방해받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용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독점적 점유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경기도서관이 경기도서관이 기후·환경 도서관이자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6조의2(독서활동에 대한 지원)는 실질적인 독서문화진흥을 도모하고 폭넓은 독서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원 수단을 기존 ‘지원금’에서 ‘지원금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보상 방식을 단순 현금 지급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화폐, 도서 교환권, 포인트 등 사업 특성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민의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사료됨.

2.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서관의 정식 개관 및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과 실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다만, 경기도서관이 2025년 10월 27일 이미 정식 개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본 개정안의 제출 시기가 2026년 1월 22일로 상당 기간 지연된 점은 사전 입법 준비 미비와 행정의 적시성 결여를 드러내는 것임. 원칙적으로 개관 이전에 운영 기반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었어야 함(개관 이후 조례 정비 시까지 수개월간 자치법규 근거 없이 운영 지속, 시범운영 명목 행정 공백 발생)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에서 행정 공백 및 법적 근거 미비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행정절차 준수가 요구됨.

- 또한 자치법규의 구성 측면에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엄연히 다른 「도서관법」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사업' 사무를 하나의 조례에 병합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이질적인 성격의 사무를 단일 조례로 통합 운용할 경우 시설 운영과 문화 진흥이라는 상이한 정책 목표 간의 독립적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도청 내 조직 개편 등 행정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조례 전체를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바, 장기적으로는 사무의 특성에 맞게 법규 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문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경기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실익은 인정되나, 자치법규의 체계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는 보완 과제가 상존함. 이를 위해 소관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언함.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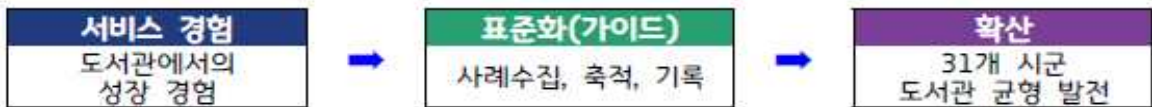
상위법령 조문에 따른 입법 목적 및 사무 비교

구분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목적	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다음을 목적으로 함. · 국민의 지식정보 및 알권리 보장 ·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규정 ·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다음을 목적으로 함. ·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 · 평생 학습 바탕 마련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개선		
정의	· 도서관, 사서	시설·인력	· 독서문화, 독서자료	활동·매체
	· 도서관 자료,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 제공자	자료·서비스		· 독서 소외인, 학교
	· 납본, 기술적 보호조치	행정·제도		
경기도서관 개정안 주요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물리적 인프라 관리 및 서비스 운영]</p> · 광역대표도서관 지위 및 인력·시설 기준 (안 제13조) · 도서관자료 및 행정간행물 납본 체계 (안 제14조, 제17조의3) · 자료 열람·대출 및 회원제도 등 기본 도서관 서비스 (안 제17조, 제17조의2) · 폐기 자료 재활용 등 자원 순환 (안 제17조의4) · 출입 제한, 시설 사용허가·사용료 등 현장 질서 유지 (안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p style="text-align: center;">[도민 대상 독서 문화 진흥 정책]</p> · 독서 문화 활동을 수행한 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급 (안 제26조의2)		
시사점	경기도서관 개관에 맞춘 시설 운영, 장서 관리 및 현장 통제 등 '도서관 관리 행정 체계'에 집중해야 함	도민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독서 동아리 지원 등 '독서 진흥 사업'의 독립적인 추진 동력에 집중해야 함.		

2026년 정책방향

비전

도민의 삶과 정책의 변화를 선도하는 경기도서관



정책 목표

실행 전략

